

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 4-2-22

규정번호 4-2-22
제정일자 2017.10.25
최근개정 2025.9.29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규정」 제 10조, 제15조, 제16조에 의하여 정원조정이 시행되거나 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된 학과의 교원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5.9.29.)

제 2 조(정의)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.

1. 학과 정원조정 및 통폐합·변경으로 책임 강의 시수를 채울 수 없는 교원
2. 학과 폐지가 결정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
3. 학과신설 등에 따라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(신설 2025.9.29.)

제 3 조(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) ① 제2조(정의)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소속변경 및 기타 인사사항 결정을 위해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1.11.29.)

②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는 우리대학 교원인사위원회로 하고,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(개정 2018.08.27.,2021.11.29)

③ <항 삭제(2021.11.29.)>

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의 소속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
2. 소속변경 신청 교원과 소속변경 대상 학과 간의 의견 조정
3. 교원의 잔존신청에 대한 심의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21.11.29.)

제 4 조(소속변경 신청) ① 제2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유사전공학과 또는 행정부서로 소속변경(개정 2025.9.29.)
2. 전공전환을 통한 소속변경
3. 신설학과로 소속변경(신설 2025.9.29.)

② 제1항에 따른 소속변경은 2회에 한하여 각각 1개 학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소속변경 절차) 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그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변경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학과 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변경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2 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

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소속변경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5.9.29.)

④ 전공전환을 통한 소속변경 신청 시 제1항 및 제2항의 소속변경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 외에 서약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이 소속변경을 신청한 대상 학과의 학과장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소속변경 신청에 대한 대상 학과 의견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⑥ 교무처장은 소속변경 신청서와 소속변경 신청에 대한 대상 학과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의뢰한다.

⑦ 위원회의 각 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정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한다. 이 때 위원회는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 또는 소속변경 대상 학과의 학과장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⑧ 위원장은 위원별로 각각 평가한 결과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점으로 심사 결과표[별지 제4호 서식]를 작성하며, 소속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준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제3항의 신설학과로 소속변경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(개정 2021.11.29.,2025.9.29.)

⑨ 교무처장은 제8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교원에게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.(개정 2025.9.29.)

제 6 조(재심사) ① 소속변경 신청 교원이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② 교무처장은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 7 조(전공전환 교원의 의무) ① 전공전환을 통한 소속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소속변경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대학 석사 과정에 등록한 후 등록 관련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, 등록 후 3년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병가나 휴직 기간은 석사학위 수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(개정 2018.08.27)

② 제1항의 학위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08.27)

③ 전공전환 교원은 석사학위 이수 기간 중 책임시수 이상 강의하는 것이 원칙이다.

제 8 조(전공전환 연구비 지원) ① 전공전환 교원에게 석사학위 취득에 따른 연구비를 일반대학원인 경우 4학기, 특수대학원인 경우 5학기까지 지원한다.

② 연구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기당 등록금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며, 지원액은 연간 총 1,000만원을 넘지 않는다.
2. 제1호에 따른 등록금은 정규학기 등록 시에만 지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2 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

③ 연구비는 매학기 등록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.

④ 전공전환 교원은 3년 이내에 석사학위 미취득 시 지원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직권면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교원

2. 전공전환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 기한을 초과한 교원, 또는 석사학위 취득 계획과 다른 학위나 전공을 취득한 교원

3.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소속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

제 9 조의 2(직권휴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다.
(조신설 2022.02.21.)

1.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속변경허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시수 이상의 강의
를 수행하지 않는 교원

2. 제7조 제3항에 따른 강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교원

② 직권휴직의 기간과 휴직교원의 처우는 명지학원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14호의 휴직사유에
준하여 처리한다.

제 10 조(소속학과 잔존) ① 총장은 폐지가 결정된 학과의 폐과일 전까지의 학사운영을 위하여
직권면직 대상인 교원의 소속 잔존신청을 받아 잔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소속학과 잔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
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6조제1항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2 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9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제3호, 제4조제1호제3호, 제5조제3항·제8항·제9항, 별지1, 별지2)

[별지 제1호 서식]

소속변경 신청서

현 소속		직 급	
성 명			
변 경 소 속			
신 청 유 형 (V 표시)	· 유사전공학과/행정부서로 소속변경() · 전공전환을 통한 소속변경() · 신설학과로 소속변경()		
학 위 취 득 계 획 (※전공전환 신청자만 기재)	학위취득(예정) 대학		
	소재지		
	전공		
	학위 종별		
	수학예정기간		
변 경 사 유			
변 경 소 속 기 여 사 항			

본인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「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」 제5조에 따라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신청인 : (인)

※ 첨부 : 자기계발계획서 1부.

[별지 제2호 서식]

소속변경 신청에 대한 대상 학과(부서) 의견서

소속변경 신청교원	현소속		직급	
	성명			

항목	의견
신청교원의 희망학과(부서) 전공 관련성	
신청교원의 희망학과(부서)에 대한 적절성	
신청학과(부서)와의 기여도	
종합의견	

「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따른교원인사관리규정」에 따라 본 학과에
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장(부서장) : (인)

학과교수 : (인)

.

.

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심 사 평 정 표

소 속 변 경 신 청 교 원	현 소 속		직 급	
	성 명			

심 사 기 준	배점	평점	비고
교육 및 연구 실적 (기존 학과 최근 3년 실적)	30		
자기개발 계획 (교육 및 연구 역량 포함)	30		
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성실도 (징계처분사실 고려)	20		
대학 기여도 및 발전 가능성	20		
합 계	100		

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원 : (인)

위원장 : (인)

서 약 서

본인은 학위취득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지원금 반환 등의 처분을
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자 : 학과 성명 : (서명)

학과장 : 학과 성명 : (서명)

확인자 : 교무처장 (서명)

명지전문대학 총장 귀하

4-2-23 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 관한 규정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2 학과정원조정및신설·통폐합·변경·폐지에 따른 교원인사관리 규정

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 관한 규정

4-2-23